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9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소송구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한솔, 유지승, 김기일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85,0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85,0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에 기재된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제2항에 기재된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16,8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9,925,0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9,925,0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의료법 등 위반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B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의료인이다.
- 2)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C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3. 2.경부터 2011. 9. 30.까지 D, E 명의로 ‘F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567,167,7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2010. 5. 1.경부터 2012. 4. 26.경까지 G 명의로 ‘H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668,610,1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며, 2011. 2. 24.경부터 2011. 9. 30.경까지 I 명의로 ‘J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280,116,4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1. 26.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6고합609).
- 3) B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16. B이 편취금액 중 약 270,000,000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노54), 상고하였으나 2018. 9. 28.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882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87056호로 2015.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등

원고는 2016. 1.말경부터 2.말경 사이에 B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H의원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59,483,3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F의원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78,663,63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환수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명의신탁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신탁자인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경우 B이 L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 행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사해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B에 대하여 309,925,064원의 환수금 등 채권을 가지는 사실 및 위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이때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선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고, 명의신탁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거나 매수자금을 부담한 바 없고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환수채무 때문이 아니라 B이 C에 대해 348,082,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지 약 1개월 후인 2015. 7. 7. 위와 같은 채무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4나20357(본소), 2014나20364(반소)]이 선고되었다(한편, 이러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당시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선불리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L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28. 접수 제169717호로 2015.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L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26,44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위 매매대금으로 B 등 상속인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상속세 151,293,290원을 납부하거나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 위 매매대금을 피고의 이익으로 사용한 바 없다.

③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을 목적으로 L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매매대금은 상속세를 내거나 C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매매대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처분 후 매매대금 또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사해행위 대상 법률행위의 실질적 매도인인 B의 수탁자로서 중간생략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신탁자인 B이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B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때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B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9. 접수 제162625호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41,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0. B의 부(父)인 망 N과 O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O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차임 월 345,000원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B의 모(母)인 P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부동산이 B에게 상속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더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L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B의 상속세 등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1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②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처분권한 등을 보유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B이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감정인 Q의 감정에 의하면 2021. 8. 9.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은 15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53,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을 공제한 후 그보다 적은 금액인 93,095,064원을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3,095,0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85,0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93,085,06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탁자인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1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원고가 B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한데,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수탁자로서 L에게 중간생략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수영, 판사 정지원, 판사 황정현

별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금액의 가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는바(2022. 6. 7.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